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5184(2021.2.13.)에 따른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

Ⅱ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2 적용 대상

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<u>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</u>을 이유로, <u>5인</u>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<u>동일한 시간대</u>, <u>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</u>에 모여서 진행하는 <u>일시적인</u>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 - 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- (인원산정) '5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은 제외
- '사적모임'은 영유아^{*}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 - *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※ 적용 예외

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 - 직계가족 또는 **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**이 모이는 경우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 -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 - 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 - **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*이 필요한 경우
 - **임종 가능성**이 있어 **가족** 등이 모이는 경우
-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-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,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
 - 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 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▲ (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**각종 시험**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- 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-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-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- 3 적용 기간
 - 2021년 3월 15일(월) 0시 ~ 2021년 3월 28일(일) 24시
- 4 법적 근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 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5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 - ① (중대본)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② (지자체)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П
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- 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- 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- 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 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	771	행정처분 기준				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1차	2차	3차		5차 이상
		위반	위반	위반	위반	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	법 제49조					
따르지 않은 경우	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		경고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	10일	20일	3개월	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		경고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	10일	20일	3개월	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	 ▶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결혼을 위한 상견 례로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-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 -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 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-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 - 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김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거나, <mark>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</mark>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 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- 6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 - ① (중대본)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
Ų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Ţ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에 과태료 부과(김염병예방법 제83조)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Ú
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- 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
- 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	771	행정처분 기준				
위반사항	│ 근거 │ 법조문	1차	2차	3차	4차	5차 이상
		위반	위반	위반	위반	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	법 제49조					
따르지 않은 경우	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		경고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	10일	20일	3개월	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		경고	운영중단	운영중단	운영중단	폐쇄명령
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	10일	20일	3개월	

-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집합·모임·행사,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

< 집합·모임·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 이용자 수칙 ▶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▶ 마스크 착용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시자 참석자 등 모임·행시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< 전시회. 박람회. 국제회의 >

➤ 선시회, 탁급회, 녹세회의 ╱				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			
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귀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	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			
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•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•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•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			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참석자 등 모임·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-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 - 『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-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 - 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기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 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<u>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</u>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